



「경찰공무원 시험대비」 경찰학 OX 문제 및 해설(2)



| 박용중 교수 | 박문각 경찰학원

[20 승진]

17.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즉시 회수 대상이다.

▶ 무기·탄약 회수 및 보관

즉시 회수	1.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대상이 된 자 2.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3. 사의 표명자	【징형사 불고문】
심의위원회 심의 후 회수	1. 정서 불안자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2. 직무 적성검사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3. 정신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4. 기타 기관장이 무기 소지 적격여부 심의 요청자	
무기고 보관	1.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.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.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

[18 승진]

18. 「경찰장비관리규칙」 상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·지휘용·행정용·순찰용·특수구난용 차량으로 구분한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용도별로 전용, 지휘용, 업무용(수사X, 행정X), 순찰용, 특수용 【전지업체】 순(대국)특】

[21 경재]

19. 검찰총장, 경찰청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1급비밀 및 1·2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【112】: 대통령, 국무총리, 각 부·처의 장, 검찰총장 등이며, 경찰청장은 2·3급비밀 및 3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다.

[21 채용 2차]

20. 「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」에서 전자교환기(통합장비)실, 정보통신관제센터, 정보보안기록실은 제한구역에 해당한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정보보안기록실은 통제구역에 해당한다.

▶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설정(제60조)

제한 구역	전자교환기(통합장비)실, 정보통신실, 발간실(경찰기관), 송신 및 중계소, 정보통신관제센터, 항공대, 작전·경호·정보·보안 업무 담당 부서 전역, 과학수사센터	
통제 구역	· 정보상황실, 종합상황실(치안상황실), 정보보안기록실 · 비밀발간실, 암호취급소, 암호장비관리실 · 무기장·무기고·탄약고, 종합조회처리실	상록 비암(뱀) 무기(로) 처리

[19 경간]

21.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,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()

[정답] ○

[해설]

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, 감사 2명,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【122】

[20 경간]

22.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것

▶ 정정보도 청구 거부사유【허위무공 광고(는 정정거부)】

- 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(허위)
- ②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(위법)
- ③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유이 없는 경우(무의)
- ④ 국가·자치단체·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것
- ⑤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(광고)으로 하는 경우

[20 승진]

23.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보도등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난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)

[정답] ○

[해설]

사실적 주장(의견표명X)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는 해당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, 발생한지 6개월 이내에 청구【인심발육 정정(strong)】

[21 경간]

24.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·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. (대판 2011.9.2., 2009다52649)

[20 승진]

25. 19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를 청구할 수 있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19세 이상, 300인 이상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

[20 채용 2차]

26.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,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행정심판은 행정통제이다. 국가인권위(광의의 행정통제)와 국민권익위는 행정통제이다.

[20 경간]

27.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,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. ()

[정답] X

[해설]

국민권익위는 아래 부패행위자를 위원회 명의로 검찰, 수사처,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(할 수 있다X).